



시 보



제1608호 2023. 9. 4.(월)

규 칙

-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----- 2
- 목포시 사무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----- 6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,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9월 4일

목 포 시 장 박 홍 릉

목포시 규칙 제 1856 호

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,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
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

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제1조(「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목포시 담배소
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제3항”을 “「담배사업법 시행
규칙」 제7조의3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”을 “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”을 “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목포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」의 개정) 목포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 중 “인감증명서”를 “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”로 한다.

제3조(「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」의 개정)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 중 “인감증명서”를 “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규칙은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제3항</u>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규칙은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제4항</u> ----- ----- --.</p>
<p>제3조(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)</p> <p>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</u>에 따른 소매인(자동판매기 포함)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<u>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</u>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)</p> <p>① ----- -----.</p> <p>1. <u>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</u>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**목포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51조 (채주의 영수인)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. 다만,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<u>인감증명서</u>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1조 (채주의 영수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**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51조 (채주의 영수인)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. 다만,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<u>인감증명서</u>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1조 (채주의 영수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목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9월 4일

목 포 시 장 박 홍 릉

목포시 규칙 제 1857 호

목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

목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3조 및 제104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각각 “실·과·소·단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실·과·소·단장(5급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실·과·소·단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본문 중 “국·소·단장”을 “국·소·단장 또는 실·과·소·단장”으로, “국·소(단)·실·과·소장”을 “국·소·단장 또는 실·과·소·단장”으로 한다.

[별표1] 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⑤ (생략)

제4조 (전결 및 기안대상사무) ①
부시장, 국·소·단장, 실·과
·소장, 팀장의 전결처리 및 팀
장, 주무관의 기안사항은 별표1
과 같다.

②·③ (생략)

제6조 (전결사항의 합의) ① (생략)
②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
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
장, 다른 국·소·단장과 관련
이 있는 사항은 그 국·소(단)
·실·과·소장과 합의를 거쳐
야 한다. 다만, 의견이 상이할
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
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
받아야 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4조 (전결 및 기안대상사무) ①
----- 실·과·
소·단장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 (전결사항의 합의) ① (현행
과 같음)
②-----

국·소·단장 또는 실·과·소
·단장-- 국·소·단장 또는 실
·과·소·단장----- . ---

-----.

<별지 별도 첨부>